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20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성일종·고동진·이종배

장동혁 • 서범수 • 서지영

박덕흠 • 김상욱 • 송석준

주철현 · 김기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생산액은 2013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7.3%를 차지하는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화학산업은 집적 이익이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입지적 특성이 좋은 지역에 기업체가 집약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도서산, 울산, 여수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국내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석유화학 원료와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석유화학단지에서 화재발생이나 석유누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 주변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야기하 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석유화학단지

인근 지역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특정지역이 수인함으로써 달성되는 사회 전체의 편익을 고려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석유화학단지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석유화학단지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 행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지원사업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사. 지원사업 시행자는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되,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11조).
-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 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차. 지원사업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2호)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석유화학단지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석유화학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 입주율과 가동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 가. 전체 입주기업체 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화학업종을 운영하는 입주기업체(이하 "석유화학입주업체"라 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 나. 전체 입주기업체의 연간 생산액 중 석유화학입주업체의 연간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
 - 2. "주변지역"이란 석유화학단지의 경계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

- 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이경우 석유화학단지의 경계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석유화학단지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유화학단지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석유화학단지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원사업의 시행

-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 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 2.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이 속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 단체"라 한다)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과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 제7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이하"특별회계"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석유화학단지의 규모·생산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석유화학단지로부터의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우선 시행)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석유화학단지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한다.
 -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지원금의 관리 등)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 제12조(지원사업의 중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 1. 석유화학단지의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2.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4조의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 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3.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4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 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

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지원금을 지원한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 1. 지원사업의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
- 2. 새로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 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 제15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 제16조(지역기업의 우대)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17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나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9조(과태료) ①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